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평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99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김평남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경영, 김생환, 김인호, 김재형, 김제리, 김태수, 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 이영실, 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채유미, 최 선, 최웅식, 황규복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자치구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기초의원이 포함된 '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협의체'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음.

○ 하지만, 실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의 감시역할을 맞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어떠한 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
○ 이에, 본 조례의 자원회수시설 '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'의 구성에 서울시의원을 포함시켜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포함.(안 제8조제1항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、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협의회 구성)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,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	제8조(협의회 구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